

2. 기타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(환산율 7~10할 이내)

1) 유·초·중등 각급학교에서 교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력

합산대상교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가. 사립학교 교원	◦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(10할 이내)	◦ 「사립학교법」 제54조에 따라 교원의 임면을 승인 또는 보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요된 기간으로, 정규 교원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입증되는 경력
나. 초등 보수교육과정 대상자로 모집된 중등교원	◦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규정된 초등학교(10할 이내)	◦ 초등 보수교육과정 수료 전,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없이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경력
다. 공립학교 교원	◦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조에 규정된 공립학교(10할 이내)	◦ 교육대학 부설 교원양성소를 수료하고,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증 발급 후에 정식으로 임용된 교원으로, 교원자격증 미발급 상태에서 강사로 근무한 경력

2) 대학교원의 상통적 경력(환산율 7~10할 이내)

- 가. 상통여부(동일분야)에 대한 판단은 엄격히 하되, 「보수지침」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하여 기관별 「호봉경력 평가 심의회」를 거쳐 결정한다.
- 나. 비정규직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해당 경력별로 정해진 환산율에서 2할을 감하여 적용한다.

합산대상교원	인정대상기관	인정대상경력
가. 해양수산계대학 기관과 담당교원	◦ 법인체 회사(10할 이내)	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국제항해에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
나. 해양수산계대학 통신과 담당교원	◦ 법인체 회사(10할 이내)	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1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지 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통신장으로 승선하여 근무한 경력
다. 항공학과 담당교원	◦ 법인체 회사(10할 이내)	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「항공법」 제29조의 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과목과 동일한 비행교육 업무에 근무한 경력
라. 농공학과 교원	◦ 농촌진흥공사(10할 이내)	◦ 농공학과 졸업 후의 경력으로, 농무직으로 근무한 경력
마.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 대학원 교원 (치과, 한의과, 수의과, 간호과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교원을 포함한다.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(10할 이내) ◦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개인병원 외 기관(10할 이내) ◦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병원(9할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 후의 경력으로, 전문의(전문간호사) 자격 취득 후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 근무한 경력 ◦ 「의료법」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 ◦ 「의료법」에 따른 전문의 자격 취득전 의사로 근무한 경력
바.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, 연구기관 (10할 이내) ◦ 「상법」에 의한 합명회사, 협회회사, 주식회사, 유한회사(10할 이내) ◦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(9할 이내) 	◦ 대학(전문대학) 졸업후의 경력으로, 임용후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자격증, 면허증 또는 석, 박사 학위 취득후 경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으로서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근무한 경력

비고 : 위 표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(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)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.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(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)에 따른다.